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2,826,273	9,384,788
일반회계		266,563,868	7,996,916
특별회계		46,262,405	1,387,872
공기업특별회계		35,574,125	1,067,2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479,619	734,3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094,506	332,835
기타특별회계		10,688,280	320,648
	주택사업특별회계	9,700	2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6,391	30,792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46,204	4,38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95,635	20,869
	공업단지특별회계	843,200	25,29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63,542	16,9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2,000	3,06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7,262,388	217,872
	기반시설특별회계	39,220	1,1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59,37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